

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

[] 부여

[] 변경

[] 폐지

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① 신청인 (대표자)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	팩스번호
	주소		
② 신청 사유	[] 임대·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[] 임대·임차하려는 건물등 [] 기 타		
③ 신청인 구분	소유자 []		
	임차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[]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[]		
	대리인 []		
④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	※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.		
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	동번호 ()개, 층수 ()개, 호수 ()개		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

귀하

시·도지사

첨부서류	1. 건물등의 동·층·호에 대한 배치도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2.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⑤ 상세주소 부여·변경 신청 동의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·변경을 신청하는 데 동의합니다.

건물등의 소유자

(서명 또는 인)

(뒤쪽)

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⑦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.

① 문자 메시지 [] ② 전자우편 [] ③ 팩스 []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 신청인: 상세주소 부여·변경·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,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.
- ② 신청 사유: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는 이유를 해당하는 칸에 'V' 로 표시합니다.
- ③ 신청인 구분: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, 임차인 및 대리인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 'V' 로 표시합니다.
※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 'V' 로 표시합니다.
- ④ 상세주소의 부여 등을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.
- ⑤ 상세주소 부여·변경 신청 동의서: 상세주소 부여·변경 신청을 임차인이 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적습니다.
-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: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적습니다.
- ⑦ 상세주소 부여 등에 따른 결과를 공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통보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칸에 'V' 로 표시합니다.

※ 상세주소(동·층·호) 부여·변경 단위 안내(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)

동: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을 말합니다.

층: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성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(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.

호: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을 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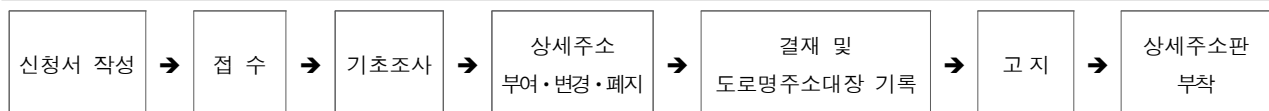
※ 상세주소(동·층·호) 부여·변경기준 안내(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 제25조제1항)

동번호: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합니다.(예시: 101동과 102동 등)

층 수: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,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'지하'를 붙입니다.(예시: 지하1층, 1층, 2층 등)

호 수: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. 다만,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한글의 “가나다라”를 순차적으로 붙입니다.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행정안전부 및 시·도(도로명주소 담당부서)

소유자 또는
임차인